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

2026. 10.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목 차

Ⅰ. 목 적 ····· 1

Ⅱ. 용어의 정의 ····· 1

Ⅲ. 추진체계 ····· 3

Ⅳ. 추진절차 ····· 4

Ⅴ.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 5

Ⅵ.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 8

Ⅶ. 사업비 집행 ····· 14

Ⅷ. 사업관리 ····· 17

Ⅸ. 부칙 ····· 21

<별표 및 별지 목록 > ····· 23

Ⅰ. 목 적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관리·집행, 사업협약 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리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과제책임자”란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5. “해외규격인증”이란 “【별표 제1호】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과 “【별표 제2호】 국가별 일반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규격인증을 말한다.

 가.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인증을 말한다.

 나.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인증제도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을 말한다.

 다. “고비용인증”이란 인증 획득 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말한다.

6. “운영위원회”란 지원대상 기업 선정 등 “Ⅲ. 추진체계 3. 운영위원회 나”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컨설팅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에 등록된 기관으로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대행 및 기술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컨설턴트”란 컨설팅기관에 소속되어 인증획득을 대행하거나 참여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출실적”이란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직접 수출실적과 간접수출과 무체물 수출실적을 말한다.

가. “무체물 수출실적”이란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 증명을 말한다.

나. “간접수출”이란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으로, 유트레이드허브에서 증명하는 간접수출 실적 증명을 말한다.

10. “성실실패”란 참여기업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시험·인증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인증획득에 실패한 경우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11. “인증획득비용”이란 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와 컨설팅비용을 말한다.

가.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을 말한다.

나.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을 말한다.

다. “컨설팅비”란 “7. 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 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Ⅲ. 추진체계

1. 관리기관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제·개정

(2)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3) 선정기업과의 사업 협약 체결

(4) 사업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5) 사업의 정부지원금 관리 및 집행

(6) 사업을 위한 동향 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7)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 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관리

(8)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사업 과제 진도관리 및 점검 협조

(4) 사업 진행 중간보고서 제출

(5) 사업 과제 완료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성과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3. 운영위원회

가. 관리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예산 규모에 따른 차수별 예산 및 고비용·일반인증 예산배분

(2) 지원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 선정

(3) 각 선정 기업별 지원금액 결정

(4) 지원대상 기업 평가의 적정성 검토

(5)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6)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의 사업 협약해지 및 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취소조치의 유예, 사업 참여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7) 참여기업별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환수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8)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 심의

(9) “【별표 제1호 및 제2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이외의 인증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필요시 해당인증 분야 전문가 활용)

(10) 기타 중기부장관 및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4.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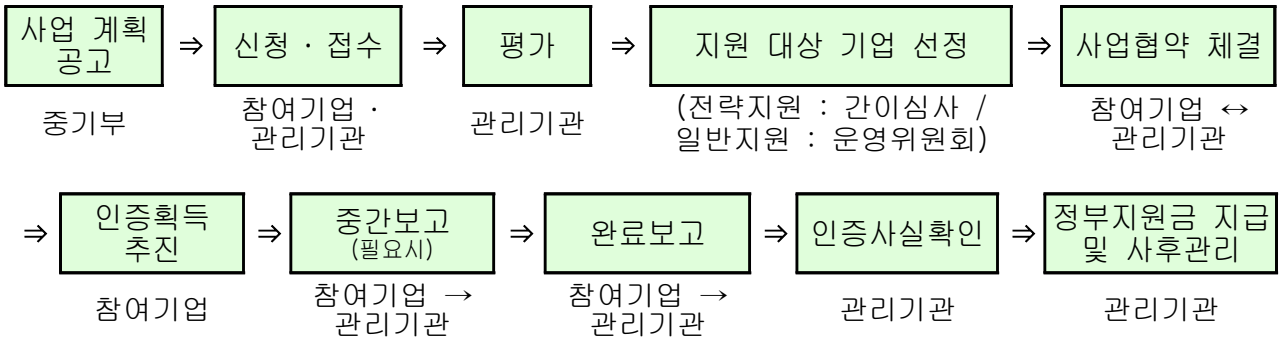
(1)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의 숙지와 준수

(2)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Ⅳ. 추진절차

“【별표 제1호 및 제2호】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Ⅴ.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1.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어도 신청 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당해 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4)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단, 당해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5)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6) 사업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7) 사업년도 직전 5개년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2. 사업신청

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 (온라인 작성)

(2) 【별첨 제1-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3) 【별첨 제1-2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4) 사업자등록증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5)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6)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7)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8)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시 전산 업로드)

(9) 비 공고 규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별첨 제1-4호】 작성(해당시 전산 업로드)

(10) 기타 구비 서류(【별첨 제1-3호】 확인 후 해당 건에 대하여 전산 업로드)

나. 신청서 제출 방법은 아래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기업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일반지원] 구분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 작성 후 등록

(2) 【별첨 제1-3호】 구비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을 업로드하고, 별도의 우편 서류 제출은 없음

다. 관리기관은 제출된 "2.의 가. (1) ~ (9)"의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 제외 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청기업 평가

가. 관리기관은 신청마감일(전략지원은 해당 월 마지막날)까지 제출된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를 "【별표 제4-1호】 또는 【별표 제4-2호】 신청기업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의 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관리기관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가. 관리기관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 및 인증 분야별로 지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나. 중기부 장관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65점 이상인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다만, 전략지원 신청기업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평가결과 65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선정금액 규모가 예산규모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기업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 획득 비용 규모

(3) 지원 우선순위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관리기관은 “나”의 선정 여부를 신청기업에 통보 하여야 한다.(통보방식은 전달 효율성을 위해 SMS, e-mail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라.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기업 제한 사유에 해당 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실제 과제 수행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Ⅵ.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1. 사업협약 체결

가.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전자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기간은 관리기관이 별도로 공지 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은 “【별지 제2호】 사업 협약서” 및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를 동 사업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작성하고 범용인증서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은 제출된 사업 협약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3) 과제수행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일반지원 참여기업은 2회, 전략지원 참여기업은 1회에 한하여 과제수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기부장관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협약 변경

가. 참여기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사업협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증 명칭 및 인증 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 포기

㉮ 수출대상국 변경, 바이어와의 협의 변경 등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이어 요청서, 수출실적,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다만,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은 변경할 수 없음)

㉯ 인증명칭 변경 등 협약금액의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약금액은 "【별표 제5-1호 및 제5-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한도액에 따라 재산정 되며, 변경 전 협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의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2) 컨설팅기관 및 시험·인증 예정기관의 변경 또는 컨설팅계약 해지

㉮ 변경사유 및 신규 컨설팅기관과의 계약서(사업협약 당시의 컨설팅기관과 계약 해지 후 직접 인증취득 수행 시에는 생략가능)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 이용중인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이 취소 된 경우, 수행중인 과제를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대체할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로 14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변경하지 않을 시 단독추진으로 자동 변경됨

㉰ 시험·인증예정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별표 제6호】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인증 승인 권한이 없는 인증예정기관으로의 변경은 관리기관에 의해 거절될 수 있음

㉱ "㉰"에 따라 거절되거나, "Ⅷ. 사업관리. 3.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른 사업 참여가 제한된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은 인증획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참여기업의 상호, 소재지 등의 변경

㉮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개인사업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이 발생하여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승계

(4) 과제 책임자 등 기타 중요사항 변경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나. 참여기업이 과제수행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변경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작성하고 범용인증서 인증 후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

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3)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완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7) “Ⅴ.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라.”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운영위원회는 “가”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입증하여 사업협약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시 심의를 거쳐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해지 및 취소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과제수행기간으로 본다.

4. 과제수행

가. 참여기업은 사업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은 동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및 컨설턴트를 통하여 인증획득 절차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중간보고 및 과제수행기간의 연장

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전 30일 이내에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중간보고서 등록 및 연장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중간보고서 및 연장신청”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제의 포기

참여기업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포기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포기사유를 작성하고 범용인증서 인증 후 포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완료보고 및 부분완료보고

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완료보고서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인증획득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협약건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완료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2) 성과보고서 1부

(3)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4)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5)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6)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7)*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8)*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9)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2)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7),(8)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 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나.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의 인증을 사업협약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이 모두 완료된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선 완료된 인증에 대해 “부분완료보고서 등록 및 현황” 메뉴를 통해서 “가.”와 동일한 절차로 부분완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관리기관은 완료보고서 또는 부분완료보고서의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회신)이 없거나 보완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완료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8. 과제의 성실실패

가. 참여기업은 다음의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별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성실실패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단,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입증 자료만을 포함하여 성실실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접수 시기	○ 최초 시험 또는 인증 접수 일자가 협약체결 후 3개월(전략지원) 또는 6개월(일반지원) 이전에 진행한 경우 - 최초 시험 또는 인증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접수증, 리포트 등) 제출
재도전 여부	○ 시험 또는 인증 심사 부적합 통보 이후 1회 이상 재도전 한 경우 - 재도전 관련 서류(부적합 리포트 및 재접수 입증자료) 제출 - 단, 부적합 통보 이후 개선 노력 없이 단순 재도전 하는 경우는 불인정 (부적합 사항 보완 관련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보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규정 강화	○ 과제수행기간 내에 시험 또는 인증의 규정, 요구사항 등이 강화 된 경우 (변경된 규정 관련 공식 문서 등 제출)
소요기간 과다	○ 시험(인증)소요기간이 1년 이상 장기시험(인증심사)으로 인하여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시험의 중지, 실패로 인한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과제수행기간 이후 인증획득	○ 성실실패 제출기간(과제수행기간 종료일 후 15일 이내) 내 인증을 획득한 경우
피해구제	○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획득에 실패 또는 지연되어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단,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 제출 필수)
천재지변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인 경우 (피해사례 입증 관련 서류 제출)

나.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실패보고 등록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실패보고서” 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과제수행기간 종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패보고서 1부 (온라인 등록 후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2) 시험성적서 1부 (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부적합 시험성적서 포함)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5)*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6)*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7)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8) 사업자등록증 1부

(9)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0)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⑸,⑹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 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성실실패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1) 성실실패 사유(2가지 이상)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별 증빙자료

다.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기 위해 실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실패 인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Ⅶ.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 정부지원금 지급 비율은 “【별표 제7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은 인증획득비용의 50%, 300억원 미만부터 100억원 이상은 60%, 100억원 미만은 70%로 한다. 다만, 성실실패 시에는 중간정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증획득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참여기업의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한다.

2. 중간정산금 및 성실실패 지원금 지급

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중간정산을 신청하거나 성실실패로 인정받은 경우 이미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사업협약 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1회에 한해 중간정산금(일반지원에 한함) 또는 성실실패 지원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성실실패지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성실실패가 인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일반지원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은 과제수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업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중간정산금 신청 및 현황” 메뉴를 선택하여 “【별지 제4호】 중간정산금 신청서”를 온라인 작성 후 다음의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범용인증서 인증 후 제출 하여야 한다.

(1)*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컨설팅 일지(컨설팅 비용이 7백만원 이상 인정되는 인증 해당 시)

(3)*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4)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5) 사업자등록증 1부

* (1),(3)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 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3. 정부지원금 지급

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완료보고 또는 부분완료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인증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협약 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Ⅷ. 사업비 집행 1. 사업비 집행 가.”에 따른 지급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협약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 사업협약에서 정한 인증과 다른 인증을 획득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제5-1호 및 제5-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협약 금액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라. 참여기업이 과제수행기간 중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보고로 정부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에 따라 산정된 정부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완료보고 또는 정부지원금 정산 시 인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사업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단, 전략지원은 매월 접수시작일 기준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

(4) 실패 또는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인증획득비용이 중복으로 소요된 경우

(5)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Invoice 및 해당기관으로 납부한 송금(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인증획득 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4. 정부지원금 환수

가. “Ⅵ.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Ⅷ.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나. 중간정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성실실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로 간주하고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다만, 성실실패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라. “가 ~ 다”에 따라 환수 통보받은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초과시 반납대상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마. “라”에 따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반납기한 초과가 발생한 달부터 반납을 완료한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Ⅷ. 사업관리

1. 수출실적관리

가.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의 수출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나. 수출실적 관리기간은 협약체결 전년도부터 인증획득 완료(정산완료)후 3년까지로 한다.

다. 관리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후 수출성과 확인을 위해 수출실적조사 및 현장 사실확인 등 지원 품목에 대한 지원성과 추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수출실적조사 및 현장사실 확인에 필요한 수출 증빙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에 협조 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가.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컨설팅 계약서, 진행 중 시험현황, 시험성적서 등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 참여의 제한

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3. 사업협약 해지 및 취소”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사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폐업으로 인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참여 중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

(4) 트랙별(전략-일반) 지원대상 인증을 잘못 신청하여 참여중인 트랙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트랙으로 신청하고자 포기하는 경우(참여를 포기한 트랙으로의 재신청은 불가함)

(5) 부분탈락(부분선정)을 사유로 사업 포기 신청 시

(6) 선정기업 중 타 사업과 중복지원을 사유로 사업 포기 신청 시

(7) 그 외 특별한 사유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관리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참여기업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사업협약된 인증 전체)을 포기 또는 실패한 경우 (다만, 성실실패로 인정된 경우 제한하지 않음)	12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중기부 및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4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은 경우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정부출연금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	반납시 까지

* 참여기업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중인 과제는 취소됨

다. 관리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 제한기준

제 한 사 유	제한기간
◦ 사업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윤리강령,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12개월
◦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참여 확인되지 않은 컨설턴트에 의해 컨설팅업무가 수행되는 경우(※)	
◦ 참여 확인된 컨설턴트가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에 대해 컨설팅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실태점검 공지일 기준 매년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점수가 2년 연속 50점 이하인 경우(※)	
◦ 실태점검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2년 연속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정부출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4개월
◦ 인증서, 관련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과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획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여기업에게 환급한 경우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컨설팅기관 참여자격조건 구비 서류 등의 위·변조 및 허위보고한 경우(※)	

(※)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적용함

* 참여가 제한된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소요한 비용은 인증획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컨설턴트의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당 컨설팅기관이 자격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은 취소된다.

(1) 관리기관은 참여 제한된 컨설팅·시험·인증기관 및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에 즉시 통보한다.

(2) 참여기업은 수행중인 과제의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 받은 경우, 수행중인 과제를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대체할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로 14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변경하지 않을 시 단독추진으로 자동 변경된다. (단, 시험·인증기관은 참여제한일 이후로 발생하는 신규 협약체결 또는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참여기업은 사업협약 변경 내용을 “Ⅶ.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2. 사업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변경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의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가. 이의신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기업의 선정·평가 또는 컨설팅기관의 등록 및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사업 협약해지 및 취소, 참여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3)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환수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은 통보 받은 당사자(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대표)가 1회에 한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 당사자는 이의 사유서를 포함한 공문으로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사유서는 통보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컨설팅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컨설턴트)가 이의신청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당사자(참여기업 또는 컨설팅 기관의 대표)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5. 성(性)에 따른 차별금지

가. 관리기관은 사업의 신청, 평가, 선정,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기관은 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비밀유지

관리기관 및 컨설팅기관은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의 해석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중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Ⅸ. 부칙(2025.3.5.)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는 공지일(202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Ⅸ. 부칙(2025.3.18.)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는 공지일(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과제수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적용례)** “Ⅵ.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7. (11) 과 8. 가.”, “Ⅷ. 사업관리, 3. 사업 참여의 제한, 가.” 및 【별표 제1호 ~ 별표 4호 관련 및 별표 제6호】 기준은 ’25년 사업 참여기업부터 적용한다.

3.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시행 전에 관리기관과 체결된 사업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이 과제수행가이드(운

영지침)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한도 및 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사업협약 당시의 기준에 따른다.

IX. 부칙(2025.4.14.)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는 공지일(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평가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3-1호, 별표 제3-3호 및 별표 제4-1호】 기준은 ’25년 사업 참여기업부터 적용한다.

IX. 부칙(2025.8.1.)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는 공지일(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적용례)**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은 ’25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3. **(성실실패 인정에 대한 적용례)** “Ⅵ. 참여기업 사업협약 체결 및 수행, 8, 가” 기준은 ’25년 사업 참여기업부터 적용한다.

IX. 부칙(2026.1.30.)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는 공지일(202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사업 참여제한 요건 완화)** **“Ⅷ.** 사업관리, 3, 가” 기준은 ’25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

IX. 부칙(2026.7.15.)

1. **(시행일)** 이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은 공지일(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제1호】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10개) ····· 1

【별표 제2호】 국가별 일반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83개) ····· 2

【별표 제3호】 의료기기 분야 지원비용 확대 대상 인증 (8개) ····· 16

【별표 제4-1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 17

【별표 제4-2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차 신청기업 평가표 · 18

【별표 제4-3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확인방법 · 19

【별표 제5-1호】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21

【별표 제5-2호】 일반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23

【별표 제6호】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 27

【별표 제7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 28

【별표 제8호】 컨설턴트 윤리강령 ····· 29

【별지 제1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0차] 신청서 ·· 36

【별첨 제1-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38

【별첨 제1-2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1

【별첨 제1-3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차 신청기업 구비 서류 · 42

【별첨 제1-4호】 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 43

【별첨 제1-5호】 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양식) ····· 44

【별지 제2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0차] 협약서 · 45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 49

【별지 제3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0차] 중간보고서 및 연장신청 · 52

【별지 제4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제0차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 54

【별지 제5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0차] (부분)완료(정산)보고서 ·· 56

【별지 제6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0차] 실패보고서 ·· 60

【별표 제1호】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10개)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FCC (미국통신위원회 전자파적합성인증)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의료기기 Class1-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화장품 등록-
유럽(EU)	CE (유럽통합규격인증) -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 (유럽화장품등록)	PPWR(신규) (유럽 포장·포장폐기물규정)
영국	SCPN (영국화장품등록)		
일본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국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HALAL (이슬람할랄인증)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별표 제2호】

국가별 일반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83개)

※ 아래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사업 가이드(운영지침) 별첨 1-4호]를 작성하여 "비 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비건 등 민간 자율 인증임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 특성 등으로 인해 수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신청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예정 (단순 마케팅 활용 또는 기업 홍보용 인증 등 제외)

국가	규 격 인 증		
미국	3-A (미국 낙농 및 식품 가공기기 인증)	AAFA (미국 천식 알레르기 친화 인증)	AAR (미국 철도 운송 시설 인증)
	ABS (미국 선급인증)	ACMI AP (미국 미술 및 창작 재료 인증)	AGA (미국 가스 설비 인증)
	AHAM (미국 가전제품 인증)	AHRI (미국 냉동 공조 기기 인증)	AISC (미국 강구조물 인증)
	AMECA (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ANSI (미국 국가표준 규격)	ANSI/ASHRAE (미국 냉난방 공조 표준규격)
	ANSI/BHMA (미국 건축 제품인증)	ANSI/BIFMA (미국 사무 및 가구 제품인증)	AOAC PTM (미국 국제분석화학회 성능검증 시험법 인증)
	API (미국 석유 및 가스 산업 인증)	ASME (미국 보일러 압력용기 인증)	ASTM (미국 재료 및 제품 표준규격)
	AWWA (미국 수도 협회 품질인증)	BLUE UAS (미국 국방부 상업용 무인 항공시스템 인증)	BPI (미국 생분해성 제품인증)
	CA Proposition 65 (미국 캘리포니아 법령 65)	CADR (미국 청정공기 공급률 인증)	CARB (캘리포니아 공기청정 장치 인증)
	CCS (미국 콘텐츠클레임 표준)	CEC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CPL (미국 속도측정 장비 적합 인증)
	CPSIA (미국 소비자제품 규격 인증)	CRRC (미국 에너지절감형 도료라벨 인증)	CTI (미국 냉각탑 열성능 인증)
	CWA (미국 수자원 보호 인증)	DLC (북미 에너지절감 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미국 DOE 에너지효율 표준)
	DOT (미국 운수성 인증)	ENERGY STAR® (미국 에너지 절약 소비자제품 프로그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미국 친환경 녹색 인증)

국가	규 격 인 증		
미국	EPA (미국 환경 보호 국 인증)	EPEAT (미국 전자 제품 환경 평가)	ETL (미국 전기기기 안전규격 인증)
	ETL SANITATION (국제 보건 위생인증)	FAA (미국 항공기 인증)	FCN (미국 식품 포장재 등록 제도)
	FDA (미국 식품 의약국 허가·등록 제도)	FDA IMS (미국 유제품 및 포장재 위생 적합 시설 등재)	FDA-GRAS (미국 식품 안전 물질 등록)
	FDA-NDI (미국 신규 건강 기능 식품 원료)	FedRAMP (미국 클라우드 보안 인증서 비스)	FHWA (미국 도로 안전 시설물 인증)
	Field Evaluation (미국 현장 설치 승인 평가)	FIPS (미국 연방 정보 처리 표준 인증)	Floor score (미국 바닥재 실내공기질 인증)
	FMVSS (미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미국 밸브 유해물질 누설 인증)	GIC Vegan (GIC 비건 인증)
	Gluten Free (미국 글루텐 안전 인증)	Green Globes (미국 그린글로브 인증)	Green Seal (미국 친환경 인증)
	Greenguard (미국 실내공기질 시험·인증)	GSA (미국 연방 조달청 제품 등록)	Halogen Free (미국 할로겐 안전 인증)
	HERS (미국 주택 에너지효율 등급 제도)	HIRF (미국 고강도 전자기 장)	HPD (미국 친환경 건축 재료 유효성검증)
	IAPMO (미국 배관 자재 환경인증)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NGBS Green) (미국 친환경 건축 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 건축자재 관련 제도)
	ITE Compliance (북미 신호등 인증)	MASH (도로 안전 시설 성능 평가)	MiamiDade NOA (미국 건축자재 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군 군사 규격)	NB mark (미국 압력용기 압력 완화 장치 인증)	NEBS (미국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스템)
	NFPA (미국 소방 설비 인증)	NFRC (미국 창호단열규정)	NGV2 (미국 고압 연료탱크 규격)
	NIJ (미국 방탄성능 인증)	NIOSH (미국 산업안전 보건 제품인증)	NMMA (미국 요트 트레일러 인증)
	NOP (미국 유기 제품인증)	NPC (미국 위생 도기 규격)	NRC (미국 국가위원회 원자력 부품 수리 인증)
	*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지정기관 중 선택하여 신청 ※ NRTL인정 21개 기관(26.9.기준): BACL, BVCPS, CSA, DEKRA, Element,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JET,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UL		

국가	규 격 인 증		
미국	NTEP (미국 측량 프로그램)	NTPEP (미국 교통 제품 평가 프로그램)	OMRI (미국 유기농업 자재 인증)
	PTCRB (북미휴대폰 인증)	RECs (미국 신재생 에너지 증명서)	Responsible Recycling(R2) (미국 재활용 책임 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 시스템)	SRCC (미국 태양열집열기 인증)	STEAM Accreditation (미국 STEAM 완구 인증)
	STEM.org Authenticated (미국 STEM.org 교구인증)	TSCA (미국 화학물질 등록 제도)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 상업용 주방기기 인증)
	UL CAP (미국 사이버보안 평가 프로그램 인증)	UL ECV (미국 환경성 주장 검증)	UPC (미국 배관 및 기계 인증)
	USCG (미국 해양 안전 관련 규제)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 농무부 바이오매스 인증)	USDA Organic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
	USP Class VI (의료용 플라스틱 소재 적합성 평가)	Water Sense Label (미국 물효율 인증 라벨)	WH-ETL (북미 건축자재 마크)
	WHI (북미지역 건축자재 인증)	WQA(Gold Seal) (미국 수질 협회- 음용수 제품 품질인증)	
유럽	AdBlue (유럽 자동차 매연 저감제 인증)	BPR (유럽 살생물제 관리 법)	BSI BS EN489 (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CCA (유럽 저전압 전기 장비 인증 상호인정 제도)	CCNR (유럽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 통합규격 인증)
	CEN/TS 17342 (유럽 오토바이도로 안전 기술규격)	COSMOS (유럽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	DEC (유럽 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인증)
	EASA (유럽 항공 안전인증)	ECARF (유럽 알러지 제품인증)	ECB-S (유럽 금고 안전인증)
	ECO PASSPORT (유럽 섬유 제조 공정 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FSA (유럽 식품안전 인증)
	EHEDG (유럽 위생 설계 및 디자인 인증)	e-Mark (유럽 차량용 부품 안전인증)	EN 12469 (유럽 미생물 안전 캐비닛성능기준)
	EN 12727 (유럽 고정의자의 안전·강도·내구성요구사항)	EN 14350 (유럽 어린이 음용 장비 규정)	EN 15267 (유럽 대기질 자동 측정 시스템 평가 인증)

국가	규 격 인 증		
유럽	EN ISO 20471 (유럽 반사색 안전 조끼 인증)	ENEC (유럽 규격 전기 인증)	ESV (유럽 위성 통신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 유기농 식품 인증)	EU REACH (유럽 화학물질 등록 제도)	EU TPED (유럽 이동식 압력기기 인증)
	EU-MED (유럽 선박 장비 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 프라이버시씰 인증)	FIBC (유럽 산업용 벌크 포장재 인증)
	Green Dot (유럽 포장재 폐기물 관련 인증)	M Classification (유럽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NATRUE Label (유럽 천연·유기농 화장품 라벨)
	Nordic Swan (유럽 노르딕 스완 환경인증)	Novel Food (유럽 신규 식품 및 식품 첨가제 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 식품 플라스틱 인증)
	Regulation (EU) 2019/1021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규제)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지침)	Seedling (유럽 생분해 인증제도)
	Solar Keymark (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 전기 안전인증)	Kiwa Water Mark (네덜란드 위생 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네덜란드 반도체 RF 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 디젤 자동차 배출 미립자개수농도 측정 기 형식승인)	Regeling Meetmiddelen politie (네덜란드 경찰용 교통 단속 측정 장비 규정)	
덴마크	DEMKO (덴마크 전기기기 인증)	Drop Mark (덴마크 음용수 안전인증)	Ø-label (덴마크 유기농 인증)
독일	AD2000 (독일 압력용기 인증)	AGR (독일 척추 건강 제품 인증)	BDIH (독일 유기농 마크 인증)
	BV-043 (독일 해군장비 규격)	DASt-Guideline (독일 철강건설 제품인증)	Dermatest (독일 피부저자극 인증)
	DIN (독일 표준규격)	DVGW (독일 가스 식음료 인증)	GS (독일 품질 안전)
	ift Rosenheim (독일 로젠하임 창호 기술연구소 인증)	IT-Grundschutz (독일 정보 보호 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 식수관련 인증)
	LFGB (독일 식품 용품 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 시험청 품질인증)	LTF (독일 항공기 감항성 시험)
	MPA (독일 건축자재 인증)	TUV (독일 기술 검사 협회 인증)	VDE (독일 전기 기술자 협회 인증)
	VdS (독일 화재예방 및 보안 시스템 인증)		

국가	규 격 인 증		
영국	ARL (영국 알러지 저감 인증)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 통신 기기 승인)
	BBA (영국 건자재 인증)	BSI (영국 표준규격)	CPA (영국 상업용 제품인증)
	EPC (영국 에너지효율 인증)	FIRAGOLD (영국 가구 품질인증)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 분석 인증)
	LR (영국 선급인증)	UK REACH (영국 화학물질 등록 제도)	UKCA (영국 안전규격 인증)
	WRAS (영국 수도 기자재 인증)		
이탈리아	ACCREDIA (이탈리아 전기 제품인증)	ICIM (이탈리아 음용수 부품 인증)	IMQ (이탈리아 전기 제품인증)
	RINA (이탈리아 선급 형식승인)	7	
프랑스	ACS (프랑스 보건 위생 적합증명)	BV (프랑스 선급인증)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 식품, 비식품 시장감시 제도)	ECOCERT (프랑스 생산 공장 인증)	GTT (프랑스 선급- GTT)
	NF (프랑스 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 전기기기 안전인증)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스페인 사이버 보호 인증제도)	AENOR (스페인 규격 인증)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 국가 보안 인증제도)
핀란드	FI Mark (핀란드 안전인증)		
스웨덴	P Mark (스웨덴 규격 인증)	S Mark (스웨덴 전기기기 안전인증)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 선급인증)	NEMKO (노르웨이 전기기기 인증)	NIPH (노르웨이 음용수 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 표준 해양 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스위스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Swissmedic (스위스 의료기기 등록)	

국가	규 격 인 증		
슬로바키아	Health and safety act (슬로바키아 장비 검증)		
일본	ASIA GAP (아시아 식품 관리제도)	BAA (일본 자전거 승인)	BOKEN (일본 방적 시험 평가)
	Building Material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일본 건축자재 평가)	CHAdeMO (일본 전기차 급속충 전기 인증)	ClassNK (일본 선급인증)
	CMJ mark (일본 전기 용품 및 부품)	CSCL (일본 화학물질 등록 제도)	F☆☆☆☆ (일본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인증)
	FESC (일본 소방 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 선박 형식승인)	JAPEIC (일본 용접 관리 프로세스 인증)
	JAS (일본 유기 제품인증)	JCII (일본 식품 포장 용기 인증)	JCMVP (일본 암호모듈 인증)
	JET PVM (일본 태양광 인증)	JFRA (일본 불연 재료 인증)	JFSA (일본 식품 위생 법)
	JIA (일본 가스 기기 인증)	JIS (일본 표준규격)	JISEC (일본 IT 보안 평가 인증)
	JPEx (일본 방폭 인증)	JWWA (일본 수도 인증)	MLIT (일본 국토교통성 인증)
	PMDA(JPAL) (일본 의약품 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	PSC (일본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인증)
	SIAA (일본 항균 제품인증)	S-mark (일본 안전 인증)	ST MARK (일본 완구 협회 안전 마크)
	Steel Fabrication Plant Grading System (일본 철골 제작 공장 인증)	VCCI (일본 전자파 장해 인증)	일본 ECO mark (일본 친환경 제품 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 MIC, JATE, TELEC)		
러시아	EAC-MED (유라시아 경제연합 의료기기 인증)	Federal Agency for Air Transpor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 항공 조명 인증)	Fire Protection Certificate (러시아 소방 안전 증명서)
	FSB (러시아 암호화 인증)	GOST (러시아 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 계측기 인증)
	Quality control and sanitary safety of importing/exporting processed and unprocessed (수출·입 수산물·수산 가공 품의 품질 관리 및 위생 안전)	RS (러시아 선급 인증)	RTN (러시아 연방 위험 산업 시설 인증)
	SGR (유라시아 위생 등록)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	

국가	규 격 인 증		
말레이시아	BOMBA (말레이시아 소방 방재 인증)	DOSH (말레이시아 압력용기 인증)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 에너지 효율)
	MDA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등록)	MS 144 (말레이시아 콘크리트 보강용 강선 규격)	NPRA (말레이시아 화장품 의약품 등록)
	SIRIM (말레이시아 표준 산업 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 보건 안전인증)	IFETEL (멕시코 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 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 위생 등록)		
대만	BSMI (대만 강제인증)	CNS (대만 국가표준)	CR (대만 선급 인증)
	NCC (대만 통신 기기 인증)	Taiwan Green mark (대만 환경 보호 인증 마크)	VSCC (대만 자동차 및 부품 인증)
	대만 FDA (대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대만 FDA FCM (대만 FDA 식품 접촉 물질 규제)	
태국	NBTC (태국 통신 인증)	Thailand Green Label (태국 그린 라벨)	TISI (태국 공산품 규격 제도)
	태국 FDA (태국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브라질	ABESE (브라질 전자 보안 제품 인증 제도)	ANATEL (브라질 통신 인증)	ANVISA (브라질 식품, 의약품 인증)
	BRAZIL NR (브라질 산업 안전 관리 인증)	INMETRO (브라질 강제 인증)	MAPA (브라질 농약 약품 등록)
	PBE (브라질 에너지 라벨링 제도)		
사우디 아라비아	CST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인증)	SASO (사우디아라비아 강제인증)	SFDA (사우디아라비아 식품, 의약품 인증)
싱가포르	BCA Green Mark (싱가포르 건축물 그린마크 인증)	BS476-22 (싱가포르 방화문 테스트)	CPSR (싱가포르 제품 안전인증)
	Data Protection Trustmark (싱가포르 데이터 보호 표준 및 적합성 인증)	HSA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IMDA (싱가포르 통신 장비 인증)
	MTCS (싱가포르 클라우드 보안인증)	NITES (싱가포르 보안인증)	SFA (싱가포르 식품 시설 등록)

국가	규 격 인 증		
싱가포르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 친환경 인증 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 물효율)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INTI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 인증)	IRAM (아르헨티나 규격 인증)
인도	ARAI (인도 자동차 시스템 부품 인증)	BIS (인도 제품 인증)	CDSCO (인도 화장품 등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인도 자동차부품 인증)	CPRI (인도 전기 전력 인증)	CRS (인도 전자 제품 강제 등록 제도)
	DCGI (인도 의약품 허가 제도)	IBR (인도 보일러 규정)	IRS (인도 선급 인증)
	MTCTE (인도 통신 장비 보안 규제)	RDSO (인도 철도 인증)	STQC (인도 생체인식 장치 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네시아	BKI (인도네시아 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 등록)	K3L Registration (인도네시아 안전·보건·환경 제품등록)
	PKRT (인도네시아 보건 용품 인증)	SDPPI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 기기 인증)	SNI (인도네시아 국가 규격)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인증		
중국	CCC (중국 강제인증)	CCIS (중국 네트워크 핵심 설비 및 사이버보안 전용 제품 안전인증)	CCS (중국 선급 인증)
	CEL (중국 에너지 효율 라벨)	CGAC (중국 가스 용품 품질감독 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 환경 b 표지 인증)
	CHINA ORGANIC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HINA REACH (중국 화학물질 등록 제도)	CMA (중국 계량 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CRCC (중국 철도 제품 인증)	CSEL (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Former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중국 미생물 수입 등록)	GACC (중국 식품 해외 제조 자 등록)
	GB 18030 (중국어 인코딩 인증)	GB TEST (중국 국가표준 규격 시험)	HG/T 2888-2010 (중국 고무장갑 시험 검사)

국가	규 격 인 증		
중국	ICAMA (중국 농약 제품인증)	LA mark (중국 노동 보호 용품 마크 인증)	MARA (중국 농업농촌부 동물용 제품 등록.허가)
	MOA (중국 비료 허가)	MOH (중국 수입식용수 관련 안전 제품 위생 허가)	NAL (중국 통신 장비 허가 제도)
	National Health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신식품 원료 허가)	NIM (중국 계량 계측 품질인증)	NMPA (중국 국가 식품 약품 감독 관리 총국 허가·등록 제도)
	SAMR (중국 보건 식품 허가·등록)	Sanitary License for the Production of Disinfectants and Disinfection Equipment (중국 소독제 등록)	SRRC (중국 통신 제품 형식승인)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 검사 검험 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 CVC 등)	
카자흐스탄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등록	
중동	GCC (중동 적합성 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 인증)	CCMC (캐나다 건축자재 인증)	CCPSA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NF (캐나다 화장품 사전신고)	CRN (캐나다 압력제품 등록)	CSA (캐나다 표준규격)
	CSA STAR (캐나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CWB (캐나다 용접인증)	DSL (캐나다 국내물질 등록)
	ISED (캐나다 통신 기기 인증)	MDEL/MDL (캐나다 의료기기 인증)	NHP Licensing (캐나다 천연 건강 제품 허가)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TDG Regulations (캐나다 위험물 질 운송 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 제품 적합 인증)	Kuwait EER (쿠웨이트 에너지 효율 등록)	
페루	Registro sanitario (페루 보건 등록 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 표준 산업 규격)	INVIMA (콜롬비아 식품, 의약품 인증)	RETIE (콜롬비아 변압기 강제 인증)
	RETIQ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국가	규 격 인 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 전기 안전인증)	NTA (폴란드 건축자재 인증)	PPP (폴란드 농약 약품 등록)
에티오피아	ECEA (에티오피아 판매 인증서)		
필리핀	ERC (필리핀 배전 시스템 규격 인증)	ETV-Philipphines (필리핀 환경 기술검증)	ICC (필리핀 표준규격 인증)
	NTC (필리핀 통신인증)	PEFC (필리핀 산림 제품인증)	PFDA (필리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인증)
라오스	MPT (라오스 무선통신 형식승인)		
베트남	CR Mark (베트남 안전규격 인증)	DAV (베트남 보건부 의약청 화장품 등록)	DMEC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 허가)
	PPD (베트남 비료 허가)	VFA (베트남 식품 인 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 효율 인증)
	VNTA (베트남 유·무선 통신 인증)		
호주	ABA Seedling (호주 생분해 인증제도)	ACRS (호주 신뢰성 인증)	ActivFire (호주 화재 방지 설비 인증)
	ADR (호주 자동차 안전 및 배기량 규격)	AFRDI (호주 사무 가구 품질인증)	AGA (호주 가스 안전 인증)
	AISEP (호주 정보보안 평가 프로그램)	APEC CBPR (호주 APEC 개인 정보 보호 인증)	APVMA (호주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록)
	AS (호주 표준규격)	ASD (호주 ASD 암호화 평가 인증)	ASI (호주 알루미늄 생산 공정 환경인증)
	Code Mark (호주 건축 법규 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PS (호주 개인 보호 장비)	RCM (호주 전기 전자 강제인증 규격)
	SAI GLOBAL (호주 제품 품질인증)	TGA (호주 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 인증)	Water Mark (호주 배관 제품 인증)
	WELS (호주 물효율 라벨링 제도)		
홍콩	Green Label (홍콩 그린 라벨)	HKSM (홍콩 제품 안전 마크)	OFCA (홍콩 이동 통신인증)

국가	규 격 인 증		
이라크	COSQC (이라크 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 제품인증)	NRCS (남아프리카공화국 강제 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규격 인증)
이란	CRA (이란 무선통신 기기 인증)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 화장품 의약품 인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인증)		
아랍 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 화재예방 제품 승인)	ECAS (아랍에미레이트 안전 인증)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 적합성 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 유,무선통신 인증)	UAE MOHAP (UAE 보건 예방부 등록)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 항공 우주 인증)	SII (이스라엘 표준규격 인증)	
우크라이나	Ukr SEPRO (우크라이나 제품인증)		
모로코	DMP (모로코 화장품 사전 등록)		
칠레	SEC (칠레 전기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인증)		
미얀마	MPU (미얀마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	미얀마 FDA (미얀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이집트	CAPA (이집트 의료기기 등록)	EDA (이집트 식약청 화장품 등록)	
뉴질랜드	ACVM (뉴질랜드 농약 약품등록)	BIOGRO (뉴질랜드 유기농 인증)	BRANZ (뉴질랜드 건축자재 인증)
	ECNZ (뉴질랜드 환경 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 물효율)	뉴질랜드 의료기기 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 에너지효율 라벨)		
캄보디아	DDF (캄보디아 화장품 등록)	ISC (캄보디아 안전 표준)	
벨라루스	BNOS (벨라루스 유기농 표준)		

국가	규 격 인 증		
세르비아	Type Approval of Measuring Instruments (세르비아 계량기 형식 승인)		
우즈베키스탄	GOST-UZ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카타르	Qatar CoC (카타르 적합성 인증)		
코트디부아르	CI-VoC (코트디부아르 수출 적합 인증서)		
튀르키예	KKDIK (튀르키예 화학물질 등록 제도)	TSE (튀르키예 강제인증)	
국제	AEC-Q (자동차용 전자 부품 품질인증)	AEM (장비 제조 협회 인증)	ALE 1.0 (RFID 제품 인증)
	AMCA (국제 공조 시스템 인증)	ASC (지속가능 수산물(양식) 인증)	ATP (부패성 음식의 수송 적합 승인)
	BeVeg Vegan Certified (BeVeg 비건 인증)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 화학 유해물질 인증)	Bluetooth (블루투스 제품인증)
	BRCFOOD (식품 안전 글로벌 규격)	BRCGS Packaging Materials (국제 식품 포장재 표준 인증)	BREEAM (친환경 건축물 평가 제도)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 인증)	CC (정보기술보안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 카드사 승인)
	CMMI Lv3~Lv5 (국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품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 골프제품 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 경보기 및 위치정보 제품 인증)
	Cradle to Cradle (제품 가치사슬 인증)	DIN CERTCO Home Compostable (가정용 정원 퇴비화 인증)	DLMS-COSEM (계량 장비 프로토콜 시험 인증)
	EAC (유라시아 적합성 인증 / 구 CU 인증)	Ecovadis (지속가능 경영 인증)	EFfCI (유럽 화장품 원료 품질인증)
	EHP003 (국제 열파이프 안전인증)	EMV (국제 IC 카드 보안인증)	EN 16258 (운송 온실가스 배출 표준)
	E-Stewards (전자 제품 재활용 표준)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 적합성 테스트)	EU Bio-based Products (국제 바이오 제품인증)

국가	규 격 인 증		
국제	FAIR TRADE (국제 공정 무역 마크)	FIDO (생체 인증)	FIFA Quality Mark (FIFA 품질인증)
	FSC (산림 관리 인증)	FTC (화염 시험 인증)	G7Master (국제 인쇄 표준)
	GLOBAL G.A.P (국제 우수농 수산물 인증)	GOTS (유기농 섬유 규격)	Green-e® Energy (청정 에너지 인증)
	GRS (국제 재생 표준 인증)	GRSB (지속가능 소고기 인증)	HbA1c 분석 표준 (국제 당화혈색소 측정 표준 화 프로그램)
	HDMI (PC·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규격)	Higg Index (의류 산업 환경 부담지수)	HSNO APPROVAL (유해물질 및 신규생물 관련 인증)
	IAAF (국제 육상경기연맹 인증)	ICAO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국제 표준)	ICSA Labs (IT 보안 제품 성능 인증)
	IEC 61850 (변전 자동화 인증 시험)	IEC 62282-5-100 (휴대용연료전지 전원 시스템 안전 표준)	IECEx (국제 방폭 인증)
	IFOAM (세계 유기농업 운동 연맹 유기농 인증)	IJF OFFICIAL JUDOGI SUPPLIER (국제 유도 연맹 유도복 공식 인증)	ILO-Better work (국제 노동 인권 인증)
	IMDG Code (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정)	International EPD (국제 환경성 제품 선언)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 그린 리프 마크)
	IPA (클린룸 인증)	ISCC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인증)	ISEGA (유럽 식품 접촉 안전성 인증)
	ISO 12500 (압축 공기용 필터 국제 표준)	ISO 14064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검증 제도)	ISO 21434 (자동차 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 위험 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 기능 안전성 국제 표준)	ISO 3834 (국제 용접 품질인증)
	ISO 7096 (토공 건설 기계 운전자 관련 진동 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 테니스연맹 테니스볼 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 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 제품인증)
	IWA 14-1 (국제 차량 보안 안전인증)	KOSHER (유대교 식품 적합 인증)	LEED (녹색건물 인증제도)
	LPCB (보안 및 화재예방 인증)	Matter Certification (스마트홈 연결 표준)	MPR2 (전자파 측정 및 검사 규격)

국가	규 격 인 증		
	MSC-CoC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	NADCAP (국제 항공기 자동차부품 인증)	NON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 미사용 인증)
	OCPP 1.6 (전기 차충 전기 규약)	OCS (유기농 섬유 인증)	OEKO-TEX® Standard 100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
	OIML (국제 법정 계량기 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 생분해성 친환경 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 인증)
국제	OpenADR (전력수요 관리 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 보안 국제 규격)	PFAS (과불화화합물 규제)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 발자국 제품 라벨)	Profibus (국제 공장자동화 기기 인증)	QI (무선 충전 표준 인증)
	R&A Certificate (골프 용품 인증)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 보호 인증)	RCS (재활용 원료 포함 제품인증)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 및 펄프 재활용 인증)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SB (바이오기반 원료, 연료 인증)
	RSPO (국제 친환경 팜유 인증)	RTRS (지속가능 콩재배 인증)	RWS (친환경 울 생산 복지 인증)
	SCS GLOBAL EPD (SCS 글로벌 환경성 제품 선언)	SEMI (반도체 장비 인증)	SG-Mark (소비자 제품 안전인증)
	SIL (국제 안전 레벨 등급 인증)	SMETA (윤리적 공급망 인증)	SQF (식품 품질 안전)
	STANAG (NATO 군사 장비 표준화 협정)	TCO05 (정보 사무기기 효율 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차단 검증 인증)
	TISAX (자동차 정보보안 평가)	Toxproof (환경 유해물질 안전 마크)	UCI (국제 사이클연합 인증)
	UN Specification Mark for Packaging (UN 위험물 운송용 포장 용기 마크)	UN38.3 (리튬 배터리 운송 안정성 시험)	USA Pickleball (미국 피클볼 협회 장비 인증)
	USB-IF (USB 개발자포럼 인증)	Vegan Trademark (비건 트레이드 마크 인증)	V-Label (V-Label 비건 인증)
	Water Footprint Network (물 발자국 네트워크)	WHO (세계 보건 기구 살충제 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 운용성 인증)
	World Rugby Standard (국제 럭비 장비 및 시설 표준)	WPS (용접절차 인증)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 연맹 공인 인증)
	ZDHC MRSL(Lv 1 이상) (유해물질 배출 규제)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 제품 상호 호환성 인증)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 (VISA,AMEX,MASTER 등)

【별표 제3호】

의료기기 분야 지원비용 확대 대상 인증 (8개)

<table>
<tr><th>국가별</th><th colspan="2">규격인증</th></tr>
<tr><td rowspan="2">미국</td><td colspan="2">FDA (미국식품의약국 허가·등록제도)</td></tr>
<tr><td>510(k)
(시판 전 신고)</td><td>PMA
(시판 전 승인)</td></tr>
<tr><td rowspan="3">유럽(EU)
/
영국(UKCA)</td><td colspan="2">CE (유럽통합규격인증) / UKCA (영국 안전 규격 인증)</td></tr>
<tr><td>의료기기 MDR Class Ⅱ
(Class Ⅰs, Ⅰm, Ⅰr 포함)</td><td>의료기기 MDR Class Ⅲ</td></tr>
<tr><td>체외진단기기 Class B, C
(Class A sterile 포함)</td><td>체외진단기기 Class D</td></tr>
<tr><td rowspan="2">중국</td><td colspan="2">NMPA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허가·등록 제도)</td></tr>
<tr><td>CLASS Ⅱ</td><td>CLASS Ⅲ</td></tr>
</table>

※ 위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중 **건당 예상 협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억원**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가능**

【별표 제4-1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td><td>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견적서</td><td>30점</td><td>•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 미제출 (10점)
※ 단, 인증특성상 시험비 및 인증비가 없는 경우(FDA 화장품 등록 등)는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인정</td><td></td></tr>
<tr><td>해외규격
인증 획득
노력</td><td>20점</td><td>•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td><td></td></tr>
<tr><td rowspan="6">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
(직접수출
한정)</td><td>매출액
증감률</td><td>10점</td><td>•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td><td></td></tr>
<tr><td colspan="3">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수출
증감률</td><td>10점</td><td>•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table><tr><td>구분</td><td colspan="4">전년도 수출 증감률</td></tr><tr><td>분포구간(%)</td><td>0이하</td><td>40이하</td><td>100이하</td><td>100초과</td></tr><tr><td>점수</td><td>4</td><td>6</td><td>8</td><td>10</td></tr></table>*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td><td></td></tr>
<tr><td>수출실적
증감</td><td>10점</td><td>•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td><td></td></tr>
<tr><td>수출국
증가</td><td>10점</td><td>•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td><td></td></tr>
<tr><td>신시장
진출</td><td>10점</td><td>•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td><td></td></tr>
<tr><td colspan="3">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td><td></td></tr>
<tr><td colspan="2">총 계</td><td>100점</td><td colspan="2"></td></tr>
<tr><td>가점(4점)</td><td>4점</td><td colspan="3"><table><tr><th>구분</th><th>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th><th>가점</th></tr><tr><td>1</td><td>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td><td>1</td></tr><tr><td>2</td><td>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td><td>1</td></tr><tr><td>3</td><td>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td><td>2</td></tr></table>*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td></tr>
</table>

【별표 제4-2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O차 신청기업 평가표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평가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50점)</td><td colspan="2">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td><td>30점</td><td>•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견적서(또는 접수증)
*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만 인정됨
- 모두 제출 (30점), 50% 이상 제출 (25점), 50% 미만 제출 (20점), 미제출 (10점)</td><td></td></tr>
<tr><td colspan="2">해외규격인증
획득 노력</td><td>20점</td><td>•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주관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이력 (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심화교육 1회 또는 일반교육 3회(10점), 일반교육 2회(7점), 일반교육 1회(4점), 이수이력 없음(2점)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10점), 온라인 상담 참여(7점), 참여이력 없음(4점)
*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 오프라인 상담회 참여</td><td></td></tr>
<tr><td rowspan="6">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50점)</td><td colspan="2">매출액 증감률</td><td>10점</td><td>• 매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30% 이상(10점), 10% 이상(8점), 0% 이상(6점), 감소(4점)
*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매출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 6점부여</td><td></td></tr>
<tr><td colspan="3">튼튼한내수기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증감률 점수 10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 rowspan="3">수출
다변화
가능성
(20점)</td><td>수출
증감률</td><td>5점</td><td>• 수출 증감률(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table>
<tr><td>구분</td><td colspan="4">전년도 수출 증감률</td></tr>
<tr><td>분포구간(%)</td><td>0이하</td><td>40이하</td><td>100이하</td><td>100초과</td></tr>
<tr><td>점수</td><td>2</td><td>3</td><td>4</td><td>5</td></tr>
</table>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td><td></td></tr>
<tr><td>수출실적
증감</td><td>5점</td><td>•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5점), 10만불 이상(4점), 0불 이상(3점), 감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td><td></td></tr>
<tr><td>수출국
증가
(직접수출
한정)</td><td>5점</td><td>•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5점), 2개국 이상(4점), 1개국 이상(3점), 증가 없음(2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td><td></td></tr>
<tr><td colspan="2">신시장
진출
(직접수출
한정)</td><td>5점</td><td>•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5점), 1개국(4점), 신규수출국 인증 없음(3점)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
(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td><td></td></tr>
<tr><td colspan="3">수출준비활동
(20점)</td><td>•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보유, 해외전시회 참여 이력
- 상기 항목 중 4개 이상(20점), 3개(16점), 2개(12점), 1개(8점), 미 준비(6점)
* 수출관련 교육(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이수 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이 있을 경우 가점 2점부여</td><td></td></tr>
<tr><td colspan="3">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수출준비활동 점수 20점 만점 부여</td><td></td></tr>
<tr><td colspan="3">총 계</td><td>100점</td><td></td><td></td></tr>
<tr><td colspan="3">가점(4점)</td><td>4점</td><td>
<table>
<tr><th>구분</th><th>가 점 항 목
(※각 구분요건에 해당시 구분별 1회 가점부여)</th><th>가점</th></tr>
<tr><td>1</td><td>여성 또는 지방소재* 기업</td><td>1</td></tr>
<tr><td>2</td><td>소재·부품·장비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td><td>1</td></tr>
<tr><td>3</td><td>우수 중소기업
: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td><td>2</td></tr>
</table>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td><td></td></tr>
</table>

【별표 제4-3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확인방법

연번	평가기준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1	신청 자격기준 확인 (직접수출액 및 중소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직접수출액 : Tmydata 플랫폼 시스템에서 수출액 확인 - 중소기업 여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 여부확인 * 중소기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이 되어야 함 ** 글로벌강소기업 1000+ 기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 확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2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인증획득 예정 신청건별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인증·심사 견적서(또는 접수증),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 -인증획득 예정 신청 건별 시험 또는 인증기관의 견적서(또는 접수증) (예시 : 4건 신청은 4건의 견적서 제출시 만점, 인증획득 예정 신청 건수보다 제출된 견적서가 적을 경우 제출 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인증획득 예정 품목의 인증명 및 품목명(모델명)이 견적서(또는 접수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에 대한 견적서(또는 접수증)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3	무체물 수출실적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를 별도 제출 한국무역협회(https://membership.kita.net) → 용역/전자적 무체물→ 로그인→ 증명서 신청 및 조회→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발급하여 별도 제출	한국무역협회	1566-5114
4	간접수출실적	○ 관세청 미 집계 간접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간접수출실적 증명서를 별도 제출(필요시)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 → 로그인→ 구매확인통합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하여 별도 제출	한국무역 정보통신	1566-2119
5	교육이수 수료증 (해외인증포함)	○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의 수출관련 교육 (해외인증포함) 수료증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교육에 한함)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온라인 교육 인정가능	교육주관기관	-
6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이력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담대응반 전문심층상담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전문심층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사업신청 마감일(전략지원은 매월말) 이내에 전문심층상담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점수부여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전담대응반	1577-9911
7	원산지 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본부세관	-

연번	평가기준	확인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8	수출준비활동 (기타)	○ 홈페이지(영문) 보유여부,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	-
9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참여완료에 한함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 확인서 1부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서식(별표 제1-5호) 활용 단,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1)인보이스, 2)은행 송금증, 3)전시회 부스 배치도, 4)참가업체리스트 제출 (단, 한건이라도 미제출시 불인정)	해당 전시회주관기관	-
10	튼튼한내수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 튼튼한내수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수출바우처 문의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2-8580
11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서 확인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수출바우처 문의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055-752-8580
12	여성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확인(www.smpp.go.kr) → 로그인 → 회원서비스 → 마이홈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를 통해 조회·신청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02-2038-8953
13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중기부)	○ 담당기관에 문의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044-204-7766, 7769
14	소·부·장 전문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 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 확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294
15	소·부·장 으뜸기업	○ 담당기관에 문의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소부장넷 (https://www.sobujang.net) 확인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8474
16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담당기관에 문의 (https://www.win-win.or.kr)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재)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상생정책지원부	02-368-8466
17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 담당기관에 문의 (사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에 한해 인정)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판로지원과	042-724-7672
18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	○ 담당기관에 문의 (유효기간 범위내 인정) - 전산시스템연계 자동확인 * 단,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에 한함	해외인증지원단	02-6240-4780

【별표 제5-1호】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1)	○(2)	600	2,200	1,900	1,600	DoC-CE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2)	600	4,400	3,800	3,200	DoC-CEEL2
			(RED)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1)	○(2)	2,200	8,200	7,1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CEMD2
		EU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CPNP(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CPNP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PPWR(4)	포장재	일반 포장재 (식품 포장재 제외)	○	○	500	2,800	2,400	2,000	DoC-PPWR1
			식품 포장재	○	○	500	3,800	3,300	2,700	DoC-PPWR2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000)	–	-	1,400	1,200	1,000	RP3 (추가코드)
			기술문서 컨설팅(5)	-	-	1,000	-	-	-	TD (추가코드)
영국	SCPN(3)	화장품	-	○	○	500	1,800	1,600	1,300	DoC-SCPN
			법정대리인 선임시 (기업당)	(2,600)	-	-	1,800	1,600	1,300	RP1 (추가코드)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3,0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인증서 발급)	○	○	800	5,700	4,900	4,100	CoC-PSE2
미국	FCC	Unintentional radiators	EMI(전자기파 간섭 시험) - 무선송신기능이 없는 경우	○	○	400	2,000	1,700	1,400	DoC-FCC1
		Intentional radiator	무선송신기능이 있는 경우	○	○	1,600	5,600	4,800	4,000	CoC-FCC2
	FDA(6)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600	12,000	10,300	8,600	DoC-FDME1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300	6,000	5,150	4,300	DoC-FDME1-D
		화장품	제품 및 시설등록 (MoCRA)	○	○	500	700	600	500	DoC-FDMO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의료기기에 한함)		(1,000)	-	-	350	300	250	RP2-D (추가코드)
국제	IECEE-CB test	전기전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1,400	7,000	6,000	5,000	CoC-CB
	HALAL(7)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심사대상 시설 단위당	○	○	8,000	11,200	9,600	8,000	CoC-HAL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CPNP, SCPN 인증 획득 비용 중 안전성평가보고서(CPSR) 비용은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sor, 개인 또는 소속기관)가 해당 건으로 청구한 시험비용에 한하여 인정함
*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해당 안정성 평가자의 검토·서명이 확인되는 CPSR과 안전성 평가자에 대한 인보이스 및 송금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 거래 단계가 있는 경우 각 단계별 증빙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4) PPWR은 유럽 대리인비(EPR 등록 대리인에 한함), 4대 중금속 시험(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PFAS(총 불소 시험 포함), 최소화평가(EN 13428) 등 강제 또는 강제에 준하는 항목에 한하여 지원
* 포장재 관련 PFAS 시험은 전략지원 PPWR에서 지원 가능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품목은 일반지원의 PFAS로 신청하여야 함
* PPWR은 제품(품목) 단위에 포함된 포장재 전체를 하나의 신청 품목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서 신청품목(제품)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5) PPWR의 경우, 기술문서 컨설팅 진행 시 추가코드(TD)의 인정비용을 따름

(6)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7)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별표 제5-2호】 일반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유럽 / 영국	CE/ UKCA	의료기기 (MDR)	Class Ⅰ	○	○	6,300	10,600	9,100	7,600	DoC-CEME1
			Class Ⅱ (Class Is, Im, Ir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ME2
			Class Ⅲ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체외 진단기기 (IVDR)	Class A	○	○	6,300	10,600	9,100	7,600	DoC-CEIV1
			Class B, C (Class A sterile 포함)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CEIV2
			Class D	○	○	18,000	21,000	18,000	15,000	CoC-CEIV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2,500)	-	-	-		-	-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6,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5,0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13,000	11,200	9,3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5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3,900	3,400	2,800	DoC-CEETC1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9,100	7,800	6,500	CoC-CEETC2
	UKCA	전자기기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1개 시험	○(1)	○(2)	600	2,200	1,900	1,600	DoC-UKEL1
			전자파, 전기안전, 무선통신 중 2개 시험	○(1)	○(2)	600	4,400	3,800	3,200	DoC-UKEL2
			무선통신, 전자파, 전기안전 모두 시험	○(1)	○(2)	2,200	8,200	7,100	5,900	DoC-UKEL3
		기계류	부칙 2, Part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3,900	3,400	2,800	DoC-UKMC1
			부칙 2, Part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5,400	4,700	3,900	CoC-UKMC2
	CE/ UKCA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경우		-	○	-	1,100	1,000	800	B(추가코드)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7,800	6,700	5,600	CoC-EMR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중국	NMPA	의료기기	CLASS Ⅰ	-	○	10,000	11,200	9,600	8,000	DoC-NPME1
			CLASS Ⅱ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2
			CLASS Ⅲ	○	○	30,000	21,000	18,000	15,000	CoC-NPME3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기업당)	(5,000)	-	-	-	-	-	-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	○	1,800	3,700	3,200	2,7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	○	3,000	7,500	6,500	5,4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	○	3,000	7,600	6,600	5,5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800	4,000	U (추가코드)
			미백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3,400	11,400	9,500	W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보습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2,100	1,800	1,500	M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1 개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7,000	6,000	5,000	E1 (추가코드)
			효능·효과 시험: 2 개 이상을 시험하는 경우 (보습 제외)	-	○	-	14,000	12,000	10,000	E2 (추가코드)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800)	-	-	-	-	-	-
			안전성평가보고서 인정한도(건당)	-	(800)	-	-	-	-	-
	CCC	공산품, 전기전자 등	중국강제인증	○	○	3,000	8,400	7,200	6,000	CoC-CCC
	중국자율 제품안전 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6,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2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 등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1,000	800	DoC-SRFD1
미국	FDA	의료기기[3]	510(k) (시판 전 신고)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12,000	21,000	18,000	15,000	CoC-FDME3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600	12,000	10,300	8,600	ME1 (추가코드)
		(감액지원)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시설등록)	○	-	300	6,000	5,150	4,300	ME1-D (추가코드)
		OTC	OTC Facility Fee (일반의약품 시설등록)	○	-	1,000	22,800	19,600	16,300	DoC-FDOTC
		기타제품군[4]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300	1,100	DoC-FDETC
		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1,000)	-	-	700	600	500	RP2 (추가코드)
		(감액지원)법정대리인 선임시(기업당) (의료기기에 한함)		(1,000)	-	-	350	300	250	RP2-D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인정한도)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미국	FDA-NDI	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규물질등록	○	○	7,000	21,000	18,000	15,000	CoC-NDI
	FDA-GRAS	식품	식품첨가제 신규물질등록	○	○	7,000	21,000	18,000	15,000	CoC-GRAS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1,000	12,600	10,800	9,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건자재 등 원재료	○	○	800	9,900	8,500	7,100	CoC-NRTL2
	ASME	압력용기/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6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3,000	16,800	14,400	12,000	A (추가코드)
			비파괴검사 비용 인정한도(기업당)	-	(1,500)	-	-	-	-	-
독일	Derma test	화장품	-	○	○	1,000	2,600	2,200	1,800	CoC-Derma
일본	일본무선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7,000	6,000	5,000	CoC-JAMC
국제	REACH[5]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2,100	1,800	1,5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16,700	14,400	12,000	CoC-RCH2
	RoHS[6]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2,100	1,800	1,500	DoC-ROHS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8,000	15,000	CoC-IECX
	화장품 허가	화장품	동남아시아 화장품허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	○	400	700	600	500	CoC-COS
			법정대리인 선임비용 인정한도(건당)	(300)	-	-	-	-	-	-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검사)		○	○	600	2,500	2,2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형식 승인)		○	○	1,200	8,700	7,600	6,300	CoC-SHIP2
		Approval of Manufacturer(공장승인)		○	○	1,200	5,600	4,800	4,000	CoC-SHIP3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3,200	2,800	2,300	CoC-WPS
	SQF	식품	-	○	-	2,800	9,800	8,400	7,000	CoC-SQF
	PFAS	포장재 이외 품목	과불화화합물(PFAS) 시험	-	○	400	700	600	500	DoC-PFAS
	OEKO-TEX	섬유	-	○	○	1,000	9,800	8,400	7,000	CoC-OEKO
	GRS	섬유	-	○	-	1,000	2,800	2,400	2,000	CoC-GRS
기타 (상기 한도기준이 지정된 인증 이외의 인증)		인증서 미발행		○	○	1,000	4,600	4,000	3,3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8,400	7,000	CoC-ETC2
		법정대리인 선임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 인정한도 (기업당)		(1,000)	-	-	-	-	-	-
고비용인증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	○	**7,000**	**150,000**			**HH (추가코드)**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비는 인증비용으로 인정 불가

(2) UKCA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일반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2(510k) 등급 이상인 제품의 심사비용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며, 의료기기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필요시 추가코드 선택

*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 (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4) FDA 기타 제품군 : 의료기기, OTC, 화장품 분야를 제외한 제품 시험 지원

(5) REACH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TSCA, KKDIK, CSCL)를 포함하여 지원

(6)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고비용 인증으로 협약체결 하였으나, 인증획득 완료 후 일반인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략지원 또는 일반지원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을 따름

※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별표 제3호】 의료기기 분야 지원대상"은 지정된 인증만 지원 가능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 (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인증제도 절차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 인증분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 인증분야의 기타인증으로 신청가능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 인정 비용은 지원 금액이 아닌 인정 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별표 제6호】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 등 AP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CBTL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지정범위에 대해 시험을 할 경우,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기관도 인정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AC (www.apac-accreditation.org/membership/), ILAC (www.ilac.org/signatory-search/)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③ 전항 ①,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지침 “Ⅸ. 사업관리. 4. 사업 참여의 제한”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의 인증획득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7호】

매출규모별 정부지원금 한도 기준

○ 매출규모별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인증 분야별 개별한도
		10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최대 4건[1]	연간 1억 원[2]	70%	60%	50%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별표 제5-1호 또는 제5-2호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2)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은 최대 1.5억원 지원 【별표 제3호】 참조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 단, 고비용인증*은 전국 경쟁으로 선정하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 설정
 * 고비용인증 :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

【별표 제8호】

컨설턴트 윤리강령

목 차

전 문

제 1 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대상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2. 행동규범
3. 책임완수
4. 자기계발
5. 기술적인 역량
6. 공정한 직무 수행
7. 고객의 이익
8. 기밀유지
9. 이해관계
10. 컨설팅 비용
11. 전문 업무영역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13. 보고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2. 고객만족
3. 고객의 이익보호
4. 사후관리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2. 고객과의 관계
3. 기밀유지
4. 부당경쟁
5. 수수료
6. 예측
7. 광고 선전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며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컨설팅업무 수행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강령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4. 자기계발

공공의 이익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적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맡은 책임에 알맞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 컨설팅 비용 및 계산방법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컨설팅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사후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사업별 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의 업무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컨설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고객의 정당한 업무 의뢰를 거부·기피하거나, 컨설팅 계약 체결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계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컨설팅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조직내부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컨설팅 비용 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 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아야 한다.

7. 광고 선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2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차) 신청서

(접수번호 :)　　(관할지역:)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전략지원 /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참고용

□ 신청내용

신청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예상 소요비용**	예상 협약금액***
신청1						천원	천원
신청2						천원	천원
신청3						천원	천원
신청4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 신청구분 : 인증 획득 예정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인증서 발행 건수별로 신청

** 예상 소요 비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필수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시험비를 합한 금액(컨설팅비, 재료비, 샘플제작비, 배송비, 규격 구매비, 인증교육비, 부가세 등은 제외)

*** 예상협약금액 : 인증분야별 한도기준을 적용. 고비용인증의 경우 예상 소요 비용에 컨설팅비용 인정 한도를 포함하여 매출구분비율을 적용한 금액

※ 해당 신청서는 참고용이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명)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명)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명)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 컨설팅예정기관명은 필수 입력사항임(단독 추진 또는 미등록컨설팅기관 이용시에도 필수 입력)

참고용

제품 특성		
기업 특성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고비용인증의 경우 필수 제출) * 단, 고비용인증의 경우 동 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컨설팅기관의 견적서 제출시 평가점수 미인정, 단 예상 소요 비용은 인정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일반지원에 한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외국어) □제품 홍보 동영상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수출관련(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교육 이수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교육수료증에 한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귀하

【별첨 제1-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거래실적)

③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 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조회 실시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도 판단(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③ 제공·조회할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 :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등 기업 관련 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참여 및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사업자(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 법인사업자

○ 법인명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동의자(대표)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선정과정 및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확인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제1-2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업일, 휴업일, 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글로벌강소기업 1000+, 여성기업, 튼튼한 내수기업(수출바우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상생 모델 지정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혁신제품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조달청), 해외인증 종합지원 우수기업(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 추천기업 한정) 등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및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제1-3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제○차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비 공고 규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별첨 제1-4호] 작성(해당 시 전산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
(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 **[전략지원]** FDA 화장품 등록은 컨설팅기관(등록여부 무관) 견적서도 제출가능 * 지원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규격인증 획득노력	○ 제출생략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매출액 증감률	○ 제출생략(튼튼한내수기업 포함)
	수출증가율	○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직접수출액(확정) 조회 기준 - **[전략지원]** 제출생략 - **[일반지원]** 제출생략 단, 관세청 미집계(무체물, 간접수출) 수출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증명서 제출 필요 *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UtradeHUB(한국무역통신)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수출실적 조회기간은 1월 ~ 12월까지 이며, 전전년도, 전년도 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수출실적 증가	
	수출국증가, 신시장진출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수출준비 활동 (일반지원에 한함)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온라인주소 기재(자사 홈페이지, 제품홍보 동영상), 수출관련 교육 수료증 제출(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교육 (온라인)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시 재직증명서(당해 연도 발급본) 제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참여완료에 한함) *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별첨 제1-5호] 서식 활용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	○ 제출생략
가점	가점사항	○ 제출생략

【별첨 제1-4호】

비 공고 규격인증 신청서

인증명칭(약어)		인증명칭(한글)		
인증명칭(풀네임)				
적용국가		적용규격 or 법령		
주관기관 (법령제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인증대상품목 (제도)		수출예상품목 (기업)		
인증 강제성 여부		발급 여부	인증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신청기업명		최근 1년간 수출액($)		
검토의견				
인 증 개 요				
인증절차				
인증의 필요성				
인증의 활용성				
인증서 사본				

【별첨 제1-5호】

해외전시회 참가 확인서(양식)

<table>
<tr><td rowspan="2">업 체 명</td><td row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용 도</td><td colspan="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td></tr>
<tr><td>참가 전시회명</td><td></td><td>기 간</td><td></td></tr>
<tr><td>참가 국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주관기관 확인란</td><td>직 책 :</td><td colspan="2">성 명 : (인)</td></tr>
<tr><td colspan="3">연락처 :</td></tr>
<tr><td colspan="4">상기기업은 위 내용과 같이 ○○○○○ 사업 참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기 관 명 (관인)</td></tr>
</table>

【별지 제2호】

2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차) 협약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참여기업명** 대표(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과제 개요 **접수번호 :**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전략지원 /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과제수행기간은 협약체결 시작일로부터 1년임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추진방법	인증예정기관 (인증기관)	시험예정기관 (시험기관)	컨설팅예정기관 (컨설팅기관)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제2조 협약금액의 산정

①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의 “【별표 제5-1호 또는 제5-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각 인증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고비용인증의 경우 신청시 제출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한다.)

② 과제수행기간 중 변경 또는 부분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전항①에 따라 산정된 협약금액 내에서 재 산정한다.

③ 협약금액 산정금액 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3조 완료보고 및 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참여기업은 과제수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사실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체결 당시의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기업에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제 2조 협약금액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건별 협약금액” 및 “총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당해 연도 사업비 소진시 차년도 사업비로 지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지연 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별표 제5-1호 또는 제5-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 집행비용에 50% ~ 70%를 산정하고, 협약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 및 부분완료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2개 이상의 인증을 수행한 경우 모든 인증 완료 후 전항②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분 완료보고를 할 수 있다.

⑤ 2개 이상의 인증 구분은 발행된 인증서 건수에 따른다.

제 4조 협약의 해지,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지원금 환수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나. 참여기업이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다. 과제수행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라.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사. "Ⅴ. 참여기업 신청, 평가 및 선정.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라."의 사유로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아.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전항① 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Ⅷ. 사업관리. 3. 사업 참여의 제한"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전항① 또는 전항②에 해당하거나 중간정산금 수령 후 성실실패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 5조 기 타

① 과제 수행 중 참여기업이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조 협약금액의 산정" 및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Ⅶ. 사업비 집행. 3. 정부지원금 지급."에 따라 참여기업에 지급될 정부지원금액이 감액 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일반지원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 이미 납부된 인증획득비용의 50%와 협약금액의 50%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지원금 중간정산금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 최종정부지원금은 본 협약서 "제 3조"를 따른다.

③ 관리기관은 과제의 중간점검이나 수행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전년도부터 인증획득 후 3년간 인증획득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문 및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관리기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인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참고>

1. 협약서 작성요령

○ 관리기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과 참여기업간 체결

관리기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참여기업명 기업명 대표 ○ ○ ○

○ 참여기업은 온라인에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범용인증서로 인증 후 관리기관에 온라인 제출

- 관리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하고, 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입력
- 전 화 : 1522-0141
- F A X : 02)507-8118
- 담당부서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규제대응사업단

○ 협약서 제출 기간 :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협약서 제출

2. 협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신청서에 기재된 인증명칭, 인증품목, 인증건수, 협약금액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협약서상의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등 산정시 발생되는 천원 미만금액은 절사

○ 과제책임자의 지정

- 참여기업의 경우 실제 인증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입력하고, 컨설팅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 컨설턴트를 선택

○ 협약금액

- “【별표 제5-1호 또는 제5-2호】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에 따라 자동 입력됨

3. 기타 유의사항

○ 과제 수행기간 내에 과제를 완료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관리기관이 승인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가능(전략지원은 1회, 일반지원은 2회 연장 가능)

○ 시험기관에 대한 사항

-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의 “【별표 제6호】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이용토록 함

○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사업 공고 및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숙지

○ 지원대상기업 선정 이후, 협약체결에서부터 과제수행 완료보고까지의 사업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추진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별첨 제2-1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책분석 및 사후관리 정보 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KTR') 귀중

본인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KTR)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관리기관에서 정책자료(성과분석 등)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정보 및 관련된 기업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반납,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수출입은행,
조회의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개인, 법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중소기업연구원, 한국리서치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기업은행,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정책자료 관련 용역업체(한국리서치, 중소기업연구원 등)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인증획득 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에 활용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실적 ▸수출입은행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 식별정보(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관련 실적자료, 정책 지원내역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협약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KTR에 제공하여, KTR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홈페이지와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KTR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본 동의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이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거래내역 및 실적을 제공받아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2. 상기 기관에 대한 동의 내용 : 본인의 수출거래내역 및 실적(아래 신고항목 포함)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출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HSCODE 6자리, 목적국(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수출액(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협약시) 사업자등록번호, HSCODE 6자리, 목적국(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수출액(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인증획득완료이후)사업자등록번호, HSCODE 10자리, 3년간 수출실적정보(목적국, 수출액 등)

■ 법인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본인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2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차 중간보고서 및 연장신청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범용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귀하**

첨부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시험, 인증 착수 확인용)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시험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자료)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전략지원 /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 추진 현황

완료예정일				yy-mm-dd					
인증진행 현황	시험			심사			인증		
	준비	진행 /보완	완료	준비	진행 /보완	완료	준비	진행 /보완	완료
협약 1									
협약 2									
협약 3									
협약 4									
인증진행 추진실적									
인증추진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 과제수행기간 연장 필요여부

연장 신청 (해당시)	□ 과제수행기간 연장 필요	변경전	변경후
		yyyy-mm-dd	yyyy-mm-dd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1. 시험,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 등 인증획득을 추진 중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2. 시험·인증획득 진행 현황에 따른 증빙서류 (시험리포트 등 진행 단계별 증빙자료)

【별지 제4호】

2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제○차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서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범용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2. 컨설팅 일지(컨설팅 비용이 7백만원 이상 인정되는 인증 해당 시)

3.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송금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4.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 (1),(3)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 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 협약내용

협약구분	수출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신청구분	(1) 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2) 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3) 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1. 인증명			
2. 인증명			
3. 인증명			
4. 인증명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 이미 납부된 인증·시험·컨설팅 인증획득비용만 기재

(1) 인증기관 소요비용: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 또는 등록 절차상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2) 시험기관 소요비용: 인증에서 정한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인증진행을 위해 수행한 기술자문, 서류대행 등 인증대행 비용

※ 단, 각 기관들을 거치며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재료비, 샘플 제작비, 배송비, 규격 구매비, 인증 교육비, 부가세 등은 불인정함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

신청구분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총 예상 인증획득비용을 기입

1)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까지 납부한 인증획득비용

2)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까지 납부한 인증획득비용의 50%

3)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 협약금액의 50%

4)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 (B), (C) 중 적은금액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요청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 파일 업로드(관련자료)

증빙자료	첨부자료를 업로드하여 대체함

【별지 제5호】

20○○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차) (부분)완료(정산)보고서

접수번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수행가이드(운영지침) 및 협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제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성과보고서 1부
2. 인증서사본 1부 (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3. 인증심사보고서 1부 (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4. 공장심사보고서 1부 (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5.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6. 컨설팅 일지(컨설팅 비용이 7백만원 이상 인정되는 인증 해당 시)
7.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에 대한 Invoice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 (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8.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송금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9.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 (7),(8)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전략지원 /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10자리)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1)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2)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3)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1) 인증기관 소요비용: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 또는 등록 절차상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2) 시험기관 소요비용: 인증에서 정한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인증진행을 위해 수행한 기술자문, 서류대행 등 인증대행 비용
※ 단, 각 기관들을 거치며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재료비, 샘플 제작비, 배송비, 규격 구매비, 인증 교육비, 부가세 등은 불인정함

□ 인증획득 정보

신청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최종 정부지원금 산정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인증획득비용 납부액(A)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산정액(B)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한도액(C)	최종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부분 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급 현황(해당 시)

신청구분	신청일자	인증획득비용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협약금액	정부지원금	지급일자
1.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3.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인증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인증획득비용 현황

신청 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 산정액* (C)	협약금액 (D)	기지급금** (E)	정부지원금*** (F)
1.		A * B			· C>D일 경우 = D-E · C≦D일 경우 = C-E
2.					
3.					
4.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C) : 인증획득비용(A)에 지원비율구분(B)(70%, 60%, 50%)을 적용한 금액

** 기지급금(E) : 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또는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을 합한 이미 지급된 금액

*** 정부지원금(F)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과 협약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정부지원금 중간정산 및 부분완료보고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기업은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 차감 후 지급)

4.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5. 과제 추진에 따른 성과(예상)

구 분	인증획득전 (20xx년)	인증획득후 (20xx년)(예상)	증가율 (전년대비,%)
수출지역수(대상국가수)			
수출액(US $)			
수출계약건수(건)			
국내매출액(백만원)			
종업원 수(명)			
영업이익(백만원)			

※ 아래내용은 서식에 맞추어서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1) 추진경위 및 추진목표 2) 인증추진 절차 3) 추진결과 (인증 전·후 50자 이내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비교하여 기술) 1. 경영환경향상 : 인증획득 전 / 인증획득 후 2. 기술력향상 : “ 3. 대외인지도 : “ 4. 홍보효과 : “ 5. 고용효과 : “ 6. 수출전망 : “ 4) 컨설팅수행방법 및 주요성과(해당 기업만 작성) (컨설팅 착수단계별 작업내용 기술하고, 현안문제 파악, 해결방안 도출) 5) 인증사후관리 방안 6)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7) 인증획득 제품 사진(제품이 여러건인 경우 제품별로 사진 첨부) 8) 인증획득 제품 설명
성과보고_기업명.hwp (파일등록완료)

6.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xx.xx~20xx.xx)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준비기간 : 인증필요 시기부터 인증획득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인터넷으로 등록한 성과보고서 파일을 인쇄하여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410호 수출인증지원센터 앞
* 문의처 : 1522-0141

※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전년도부터 인증획득 후 3년간 인증획득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출실적제공 및 성과증명요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동의함

【별지 제6호】

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일반) 지원 (제○차) 실패보고서

접수번호 :

20 년 월 일

참여기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귀하

첨부 1.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로 제출, 부적합 시험성적서 포함)
2. 인증심사보고서 1부(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3. 공장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부적합 보고서 포함)
4. 각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비용, 시험비용, 심사비용,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Invoice(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도 가능) 각 1부(비용청구에 대한 상세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5. 각 해당 기관에 이체한 송금(이체)증빙자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송금행위를 증빙하는 자료) 1부(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지급확인용)
 * 송금인·수취인의 계좌정보(예금주, 계좌번호 등)가 확인되는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6. 정부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일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7. 사업자등록증 1부
8. 컨설팅일지(컨설팅인정비용이 건당 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9.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내에 인증만료일이 명시된 이전 인증서 1부(인증갱신에 한함)
10. 성실실패 사유(2가지 이상)를 입증할 수 있는 사유별 증빙자료

※ (4),(5) : 인증 획득 소요비용은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참여기업과 최종 인증기관·시험기관 사이에 별도의 거래 단계(중간대행, 재의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각 거래 단계의 비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과제수행 마감일 우편 소인분 까지만 인정

1.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신청구분	전략지원 / 일반지원		주요 생산품목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목(업종)
주 소				
기업 전화번호			기업 팩스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E-MAIL (핸드폰번호)	()
과제책임자 성명(직책)	()		과제책임자 E-MAIL (핸드폰번호)	()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지원비율구분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60%)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50%)

2. 과제수행 내용

협약구분	수출 예정국가	인증명칭	신청품목 (모델명)	분야코드	품목분야 (HS code)	협약금액
협약1						천원
협약2						천원
협약3						천원
협약4						천원
과제수행기간 :				총 협약금액		천원

□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인증획득비용

추진방법	(1)인증기관 (인증획득비용)	(2)시험기관 (인증획득비용)	(3)컨설팅기관 (인증획득비용)	컨설턴트/ 연락처
1.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2.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3.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4. 인증명 [단독추진/컨설팅기관대행]				

(1) 인증기관 소요비용: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 또는 등록 절차상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2) 시험기관 소요비용: 인증에서 정한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인증진행을 위해 수행한 기술자문, 서류대행 등 인증대행 비용
※ 단, 각 기관들을 거치며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재료비, 샘플 제작비, 배송비, 규격 구매비, 인증 교육비, 부가세 등은 불인정함

3. 정부지원금 산정

□ 정산금액

신청구분	인증획득비용(A)	인증획득비용 산정액(B)	성실실패 한도액(C)	정부지원금 중간정산(D)	최종정산금액(E)
1.					· B>C일 경우 = C-D · B≦C일 경우 = B-D
2.					
3.					
4.					
계					

* 인증획득비용 산정액(B) = 인증획득비용(A)의 50%
** 성실실패한도액(C) = 협약금액의 50%
*** 최종정산금액(E) : < 0일 경우 차액분은 환수하며, 불응시 동 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정부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은행계좌는 반드시 참여기업의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이어야 함

4. 실패사유 및 향후계획

* 제출처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1동 410호 수출인증지원센터 앞
* 문의처 : 1522-0141